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1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김선교·김예지·우재준

김성원 • 구자근 • 김석기

김상훈 · 송석준 · 이헌승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5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5조제2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5조 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를 "제외된 사람(제4조에 따라지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지원을 신청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

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 략)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 제외된 사람(제4조에 따라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 지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원 람을 포함한다)이 그 형의 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 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원을 신청한 경우 「국가유공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 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현행 제③항과 동일)

③ (생 략)